

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

구 분 \ 학력별	대학졸업자	전문대학졸업자
대학 교수, 전문대학 교수	- 10	- 13
대학 부교수, 전문대학 부교수	- 7	- 10
대학 조교수, 전문대학 조교수	- 4	- 7
대학 조교, 전문대학 조교	0	- 2

비고

- 이 표 중 (+)는 가산연수를, (-)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.
-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,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,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.
- 교육부, 국가교육위원회, 국사편찬위원회, 중앙교육연수원, 국립국제교육원, 교원 소청심사위원회,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·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,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,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.
-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.
- 대학에는 교육대학(중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), 방송통신대학, 산업대학(중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),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, 전문대학에는 중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
-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(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)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